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진수 의원(찬성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518 호

다. 발의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 2. 제안이유

- 물관리일원화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변화된 물환경 관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에서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한 물순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함(안 제2장, 안 제5조 )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대상 중 불필요한 사업 삭제(안 제11조제1항제6호, 안 제11조제1항제16호, 안 제11조제1항제23호)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27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고)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물관리 일원화 이후 달라진 국가물관리 방향을 반영하여 그 동안 빗물관리 차원에서 운용되던 조례를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하는 물순환 분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저영향개발사전협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용조항이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골자별 의견

가. 용어 등 정비(안 제2장 장 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27호)

- 먼저, 안 제2장 장 제목, 안 제5조 조 제목, 안 제5조제1항은 빗물관리에서 국한하지 않고 지하수, 물재사용 등을 포함하는 물순환 분야 전체로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난 2018년 5월 28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령(「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고,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 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 상황임.

- 또한, 2017년 1월 17일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된 바, 이러한 국가적 물관리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의 포괄적 용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1조제1항제27호는 준용하는 법령 조항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추후 서울시는 조례 제·개정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제1항 중 제6호 및 제23호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읍 지역 등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기에 본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현실과 부합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2장 장 제목, 안 제5조 조제목,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16호, 안 제11조제1항제23호, 안 제11조제1항제27호)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u>빗물관리</u> 계획  | 제2장 <u>물순환 회복</u> --   |
| <p>제5조(<u>빗물관리</u>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u>빗물관리</u>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빗물관리</u>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p> <p>2. ~ 5. (생략)</p> <p>③ (생략)</p> | <p>제3조(<del>물순환 회복</del>) ① <del>물순환 회복</del></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u>물순환 회복</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37조제1항제5호</u>에 따른 방재지구</p> <p>2. ~ 5. (생략)</p>   | <p>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37조제1항제4호</u>에 따른 방재지구</p> <p>2. ~ 5. (현행과 같음)</p>       |
|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u>「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u></p> <p>7. ~ 15. (생략)</p> <p>16. <u>「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u></p>                              |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삭제</u></p> <p>7. ~ 15. (현행과 같음)</p> <p>16. <u>삭제</u></p>                       |

| 현 행  | 개 정 안   |
|--|---|
| 17. ~ 22. (생 략)  | 17. ~ 22. (현행과 같음)                                      |
|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br>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br>개발사업 | 23. 삭제  |
|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br>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br>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24. ~ 44. (생 략)  | 24. ~ 44.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정비(안 제11조제1항제16호)

- 안 제11조제1항제16호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서 해당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6호 : 「수도  
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삭제  
(2017.3.29. 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